

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
는 월평균임금 고시



[시행 2022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131호, 2021. 12. 3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노사관계법제과), 044-202-7396

1. 월평균임금

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.

2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1-131호,2021.12.31.>

이 고시는 2022년 1월 1부터 시행한다.